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출일자 : 2005. 7.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1개의 시설물 또는 택지가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5. 6. 23부로 「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감천1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사하구에서 제외하여 서구에 편입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 조정함 (안 별표)
- “감천동의 관할구역”중 373번지 내지 375번지, 산166의1번지, 산166의6번지, 산166의9번지, 산166의13번지, 산166의14번지, 산166의16번지, 산166의26번지, 산166의30번지, 산166의31번지를 각각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 시·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72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감천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 천 동	감천동일원(단, 373번지 내지 375번지, 산166의1번지, 산166의6번지, 산166의9번지, 산166의13번지, 산166의14번지, 산166의16번지, 산166의26번지, 산166의30번지, 산166의31번지 제외)
-------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감천제1동의 관할구역중 373 내지 375, 산166의1, 산166의6번지, 산166의9, 산166의13, 산166의14, 산166의16, 산166의26, 산166의30, 산166의31을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동명칭	관 할 구 역	동명칭	관 할 구 역
괴정동	괴 정 동 일 원	---	-----
당리동	당 리 동 일 원	---	-----
하단동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평동	신 평 동 일 원	---	-----
장림동	장 립 동 일 원	---	-----
다대동	다 대 동 일 원	---	-----
구평동	구 평 동 일 원	---	-----
감천동	감 천 동 일 원	---	감천동일원(단, 373번지 내지 375번지, 산166의1번지, 산166의6번지, 산166의9번지, 산166의13번지, 산166의14번지, 산166의16번지, 산166의26번지, 산166의30번지, 산166의31번지는 제외)